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 법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
宪 法

20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万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　법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
宪　法

（2026 年 3 月 22—23 日 第十五届最高人民会议第一次会议 修订补充）

2026

目录 차례

序 言 ………………………………… 2
第一章 政治 ………………………………… 3
第二章 经济 ………………………………… 5
第三章 文化 ………………………………… 9
第四章 国防 ………………………………… 11
第五章 公民的基本权利和义务 ………………… 12
第六章 国家机构 …………………………… 16
第一节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务委员会委员长 ……… 16
第二节 最高人民会议 ……………………… 17
第三节 国务委员会 ………………………… 20
第四节 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 ……………… 20
第五节 内阁 ……………………………… 22
第六节 地方人民会议 ……………………… 24
第七节 地方人民委员会 …………………… 25
第八节 检察院和法院 ……………………… 27
第七章 国徽、国旗、国歌、首都 ……………… 30

서 문 ………………………………… 31
제 1 장 정치 ………………………………… 33
제 2 장 경제 ………………………………… 36
제 3 장 문화 ………………………………… 42
제 4 장 국방 ………………………………… 46
제 5 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 48
제 6 장 국가기구 …………………………… 53
제 1 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 53
제 2 절 최고인민회의 ……………………… 55
제 3 절 국무위원회 ………………………… 58
제 4 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59
제 5 절 내각 ……………………………… 61
제 6 절 지방인민회의 ……………………… 64
제 7 절 지방인민위원회 …………………… 66
제 8 절 검찰소와 재판소 ……………………… 68
제 7 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 71

序言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是代表朝鲜人民利益、为社会主义事业而奋斗的以人民群众为中心的社会主义国家。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把伟大的金日成金正日主义作为国家建设和活动的唯一指导方针，把全社会金日成金正日主义化作为国家建设的总方向、总目标。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坚决维护并不断继承发展在祖国解放和人民自由幸福的光荣革命斗争中取得的光辉传统。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把建立领袖的唯一领导体系、坚持自主的革命路线、彻底贯彻人民群众第一主义作为国家建设和活动的根本原则。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按照领袖的构想和意图组织推进国家工作，坚决维护并永远光大领袖的国家建设思想和业绩。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在国家建设和活动中树立自主立场，按照自己的方式、自力更生发展社会生活的一切领域。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把人民群众的要求和利益置于首位、绝对化，把增进人民福祉作为自己的最高原则。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把加强人民政权并提高其功能和作用，同时彻底完成思想、技术、文化三大革命，作为社会主义建设的总路线牢牢把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适应时代变化和革命实践的要求，不断加强国家对社会全体的统一领导和管理。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提高国家对三大革命执行的指导作用，加快所有社会成员的革命化、技术经济力量的高度化以及社会全体的文明化。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彻底贯彻阶级路线和群众路线，千方百计加强全社会的一心团结，依靠人民群众的爱国热情和创造力解决一切问题，并加强人民民主专政，可靠地保卫社会主义制度和人民的权利利益。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加强人民军队，在更高水平上实现全民武装化、全国要塞化，发展国防工业，不断提高国家防卫能力。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完善法律制度，加强法纪生活，使法律保护人民、人民遵守法律。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把自主、和平、友好作为对外政策的基本理念，把维护国家利益作为不变的原则，扩大和发展对外关系，为世界和平与安全、全人类共同繁荣而斗争。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将牢牢掌握作为真正人民的法典、是革命和建设的强大政治武器的宪法，完成主体革命事业直到最后。

第一章　政治

第一条

我们国家的国号为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

第二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的领域包括北与中华人民共和国和俄罗斯联邦接壤、南与大韩民国接壤的领土，以及在此基础上设定的领海和领空。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绝不允许对其领土的任何侵犯。

第三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公民，是指具有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籍的人。

公民不受居住地和停留地限制，受到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的保护。

第四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的权力属于工人、农民、军人、知识分子等劳动人民。

劳动人民通过自己的代表机关——最高人民会议和地方各级人民会议行使权力。

第五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的一切国家机关均根据民主集中制原则组成并进行活动。

第六条

从郡人民会议到最高人民会议，各级国家权力机关根据普遍、平等、直接的原则，以秘密投票方式选举产生。

第七条

各级国家权力机关的议员同选民保持密切联系，并对选民负责。

议员失职，选举他的选民可随时予以罢免。

第八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的社会制度，是劳动人民群众做一切的主人，社会的一切都为劳动人民群众服务的以人为中心的社会制度。

国家维护工人、农民、军人、知识分子等劳动人民的利益，尊重和保护人权。

第九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在朝鲜劳动党的领导下进行一切活动。

第十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以全体人民在朝鲜劳动党周围紧密团结的政治思想的统一为基础。

国家加强思想革命，实现社会所有成员的革命化和工人阶级化，使全社会变成一个同志式地结合在一起的集体。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第十一条

国家大力开展包括争取三大革命红旗运动在内的革命性群众运动、爱国运动，最大限度地加速社会主义建设。

第十二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维护海外朝鲜同胞的民主主义民族权利以及国际法公认的合法权利和利益。

第十三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保障外国人在我国境内的合法权益。

第十四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同一切友好国家，在完全平等和自主、相互尊重和不干涉内政、互利的原则上建立国家或政治、经济、文化关系。

国家同维护自主性的世界人民加强团结，反对一切形式的侵略和对他国内政的干涉，积极支持和声援各国人民为维护国家的主权、实现民族与阶级的解放而进行的斗争。

第十五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的法律，是劳动人民的意志和利益的表现，是管理国家的基本武器。

尊重并严格遵守和执行法律，是所有机关、企业、团体和公民的义务。

第二章　经济

第十六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建立在社会主义生产关系和自立民族经济基础之上。

第十七条

在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由国家和社会团体与合作社占有生产资料。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第十八条

国家所有制是全民所有制。

国家所有的范围不受限制。

国家的一切自然资源、铁路、航空运输、邮电和重要工矿企业、港口、银行等构成国家经济基本命脉的对象，只归国家所有。

国家优先保护和发展在国家的经济发展中起主导作用的国家所有制。

第十九条

社会团体与合作社所有制是加入社会团体与合作社的劳动者的集体所有制。

土地、农业机械、船舶和中小型工厂企业可以归社会团体与合作社所有。

国家保护社会团体与合作社所有制。

第二十条

国家不断提高农民的思想觉悟和技术文化水平，按照加强全民所有制对集体所有制领导作用的方向，有机地结合两种所有制，改进对集体经济的领导和管理，以巩固和发展社会主义集体经济制度；根据社会团体与合作社全体成员的意愿，逐步把社会团体与合作社所有制转变为全民所有制。

第二十一条

属于公民个人的、以个人消费为目的的物品归个人所有。

个人所有，由社会主义的按劳分配和国家、社会提供的福利待遇构成。

个人合法所得的收入，也归个人所有。

国家保护个人所有，并依照法律保障其继承权。

第二十二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把不断提高人民的物质文化生活水平作为自己的最高原则。

我国不断增长的社会物质财富，完全用于增进劳动者福祉。

国家为人民创造富裕而文明的生活条件而斗争。

第二十三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建立的自立民族经济，是人民社会主义幸福生活和祖国繁荣富强的牢固基础。

国家坚持社会主义自立民族经济建设路线，促进国民经济主体化、现代化、信息化和科学化，为把国民经济发展成为高度发达的主体经济，奠定与完全的社会主义社会相适应的物质技术基础而奋斗。

第二十四条

技术革命是社会主义经济发展的关键。科技力量是国家最重要的战略资源。

国家在一切经济活动中增强科技的主导作用，实现科技和生产的一体化，大力开展群众技术革新运动，力促经济建设。

第二十五条

国家为消灭城乡差别、工农差别而促进农村技术革命，实现农业的工业化和现代化，并加强对农村的领导和帮助。

国家增加对农村的国家性保障和支持，强化农业的物质技术基础，为农村居民创造良好的生活环境。

第二十六条

国家推动市、郡的自立性和多方面发展，把所有市、郡建设成为文明富强社会主义强国的战略据点、具有各自特色的发达地区。

国家在所有市、郡积极开发并有效利用本地区自然资源和经济资源，加快地方工业工厂现代化、信息化，确保以地方特色为主的同步、均衡发展。

国家为地方发展的物质技术基础和条件创造保障，使地方切实增强自身力量和潜力，实现巩固而持续的发展。

第二十七条

社会主义是通过劳动群众的爱国热情和创造性劳动建设起来的。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中的劳动，是劳动者自主的、创造性的劳动。

国家使劳动者的劳动成为更加愉快而有意义的工作，使其自觉热情和创造积极性为社会、集体以及自身而发挥出来。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第二十八条

劳动者一天的工作时间是八小时。

国家根据劳动的繁重程度和其他特殊情况，酌情缩短劳动者一天的工作时间。

国家做好劳动组织工作，加强劳动纪律，保证劳动者充分利用工作时间。

第二十九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公民开始参加劳动的年龄是十七岁。

国家禁止不到劳动年龄的少年从事劳动。

第三十条

国家在领导和管理社会主义经济中，密切结合政治领导和经济技术指导、国家的统一领导和各个单位的创造性、统一指挥和民主、政治道德鼓励和物质奖励，坚持保证实惠的原则。

第三十一条

国家依靠生产者群众的集体智慧和力量，科学合理地经营管理经济，坚决提高内阁的作用。

国家在经济管理中，施行社会主义企业责任管理制，正确利用成本、价格、收益等经济杠杆。

第三十二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的国民经济是计划经济。

国家根据社会主义经济发展规律，制订并执行国民经济发展计划，以保证积累和消费的平衡，促进经济建设，不断提高人民生活水平，加强国防力量。

国家实行计划的一元化和细部化，以保证生产的高速度增长和国民经济的均衡发展。

第三十三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根据国民经济发展计划，编制和执行国家预算。

国家在所有领域开展增产节约运动，严格实行财政监督，有计划地增加国家积累，扩大和发展社会主义所有制。

第三十四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的对外贸易由国家机关、国家企业、社会团体和合作社进行。

国家在对外贸易中恪守信用，改善贸易构造，本着平等互惠的原则扩大和发展对外经济关系。

第三十五条

国家鼓励我国的机关、企业、团体同外国的法人或个人进行企业合营和合作，并鼓励在经济特区创办各种企业。

第三十六条

国家为了保护自立民族经济，实行关税政策。

第三章　文化

第三十七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繁荣发展的社会主义文化，为提高劳动者的创造能力、满足其健康的文化情感服务。

第三十八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彻底进行文化革命，把所有人都造就成为具有渊博的自然与社会知识和高度文化技术水平的社会主义建设者，促进全民科学技术人才化。

第三十九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建设为社会主义劳动者服务的真正具有人民性的革命的文化。

国家在建设社会主义民族文化中，反对帝国主义的文化渗透，本着主体性的原则、历史主义原则和科学性的原则，保护并根据社会主义现实继承和发展民族文化遗产。

第四十条

国家在科学研究事业中树立主体，积极吸收先进科学技术，增加对科学研究部门的国家投资，开辟新的科学技术领域，把本国科学技术提高到世界水平。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第四十一条

国家正确制定并彻底执行科学技术发展计划的纪律，并促使科学家、技术人员与生产者之间加强创造性协作。

第四十二条

国家运用社会主义教育学的原理，把后代培养成为为社会和集体，为祖国和人民而奋斗的真正的爱国者、智德体兼备的社会主义建设的主力军。

第四十三条

国家保证人民教育事业和干部培训工作走在其他一切工作的前面，做到一般教育与技术教育、教育与生产劳动密切结合。

国家改善教育结构、内容和方法，把教育发展成为最优越、最理想、能够放心托付我们未来的教育。

第四十四条

国家根据现代科学技术的发展趋势和社会主义建设的现实需要，在高水平上发展包括为期一年的学前义务教育在内的普遍的十二年制义务教育。

第四十五条

国家发展全日制教育体系和各种形式的边工作边学习的教育体系，不断改进教学内容和方法、教育条件和环境，以培养得力的科技人才。

第四十六条

国家对所有学生实行免费教育，给大学生发放奖学金，并扩大和加强面向后代的社会主义措施。

第四十七条

国家加强社会教育，为所有劳动者创造各种学习条件。

第四十八条

国家用国家和社会的资金在托儿所和幼儿园抚育学龄前儿童。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第四十九条

国家巩固和发展社会主义保健制度，改善医疗服务质量，强化保健部门的物质技术基础，以保护人民生命、增进劳动者健康。

第五十条

国家发展具有民族形式和社会主义内容的主体的革命文学艺术。

国家鼓励创作人员、艺术工作者大量创作思想性强、艺术性高的作品；鼓励广大群众参加文艺活动。

第五十一条

国家根据人们要在精神上不断发展和不断增强体质的要求，充分提供现代化文化设施，使所有劳动者充分享受社会主义文化生活。

第五十二条

国家实行体育群众化和生活化，使全体人民为从事劳动和献身国防做好准备，并根据我国国情和现代体育技术发展趋势发展体育技术。

第五十三条

国家创造和发展革命的、高尚的社会主义生活文化，并加强与违背社会主义生活方式的现象作斗争。

第五十四条

国家使社会全体成员在语言生活中保持主体性和民族性，保护并积极发扬平壤文化语。

第五十五条

国家使环境保护措施先行于生产，保护和改善自然环境，防止环境污染，为人民创造文明卫生的生活环境和劳动条件。

第四章　国防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第五十六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实行全民全国防卫体系。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作为负责任的拥核国，为保证国家的生存权和发展权，遏制战争，维护地区和世界和平与稳定而促进核武器发展的高度化。

第五十七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武装力量的使命是维护国家主权、领土完整和人民的权益；保卫社会主义制度和革命胜利果实，赖以强有力的军力保证祖国的和平与繁荣，使之免受一切威胁。

第五十八条

国家在从政治思想上武装人民和军人的基础上，贯彻以全军干部化、全军现代化、全民武装化和全国要塞化为内容的自卫军事路线。

第五十九条

国家在军队内确立革命的领军体系和军风；加强军事纪律和群众纪律，高度发扬官兵一致、军政配合、军民一致的崇高的传统风尚。

第六十条

国家发展国防科学技术，不断提高国防工业的主体化、现代化、科学化水平。

第六十一条

国家在全社会树立重视军事的风气，万全做好全民抗战准备。

第五章　公民的基本权利和义务

第六十二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公民的权利和义务，以「一人为全体，全体为一人」的集体主义原则为基础。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第六十三条

国家切实保障所有公民享有真正的民主权利和自由以及幸福的物质文化生活。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公民的权利和自由，随着社会主义制度的巩固和发展不断扩大。

第六十四条

公民在国家社会生活的所有领域都享有平等的权利。

第六十五条

十八岁以上的所有公民，不分性别、民族、职业、居住期限、财产状况、文化程度、所属政党、政见以及宗教信仰，都有选举权和被选举权。

在军队里服役的公民也有选举权和被选举权。

经法院判决被剥夺选举权的人和有精神病的人不得享有选举权和被选举权。

第六十六条

公民有言论、出版、集会、示威和结社的自由。

国家提供民主政党、社会团体自由活动的条件。

第六十七条

公民有宗教信仰的自由。这一权利以允许建设宗教设施、举行宗教仪式等来保障。

不得利用宗教引进外来势力或破坏国家社会秩序。

第六十八条

公民可以请愿和提出申诉。

国家对请愿、申诉，必须按照法律规定公正地进行审理。

第六十九条

公民有劳动的权利。

所有有劳动能力的公民都有权根据自己的愿望和才能选择职业，由国家保障安定的工作岗位和工作条件。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公民各尽所能地工作，按劳动的数量和质量获得报酬。

第七十条

公民有休息的权利。

这种权利，由工作时间制度、公休日制度、带薪休假制度和用国家费用进行静养与休养的制度以及不断增加的各种文化设施等来保证。

第七十一条

公民有医疗的权利。

因年老、疾病或残废而丧失劳动能力的人以及无人照顾的老人、儿童，有获得物质帮助的权利。

这种权利由不断增加的现代医疗设施、国家的社会保险和社会保障制度来保证。

第七十二条

公民有受教育的权利。

这种权利由先进的教育制度和国家的人民性教育政策来保证。

第七十三条

公民有从事科学及文学艺术活动的自由。

国家对发明家和为文学艺术发展作出贡献的公民予以关怀。

国家依法保护公民的知识产权。

第七十四条

公民有居住、旅行的自由。

第七十五条

英雄、战争老兵、战时功臣、荣誉军人、革命烈士和爱国烈士的家属、海外军事作战参战烈士遗属、社会主义爱国功臣、退役将领、世代军官、人民军军人家属，受国家和社会的特别保护。

第七十六条

妇女享有同男子平等的社会地位和权利。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国家通过保障产前产后休假，缩短多子女母亲的工作时间，建设和不断增加妇产医院、托儿所和幼儿园网以及其他各种措施，特别保护母亲和儿童。

国家为妇女创造参加工作的一切条件。

第七十七条

婚姻和家庭受国家的保护。

国家对于社会的基层生活单位——家庭的巩固，予以深切的关注。

第七十八条

公民的人身和住宅不受侵犯，通信秘密受到保护。

不通过法律程序，不得扣留或逮捕公民，不得搜查其住宅。

第七十九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对因进行争取和平与民主、民族独立与社会主义，以及争取科学文化活动自由的斗争而被迫逃亡到我国的外国人，给予保护。

第八十条

公民必须坚决维护全国人民政治思想上的统一与团结。

公民必须珍视组织和集体，高度发扬为社会和人民忘我工作的作风。

第八十一条

公民必须遵守国家法律和社会主义生活规范，维护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公民的荣誉和尊严。

第八十二条

劳动是公民的神圣义务和荣誉。

公民必须自觉地、诚实地参加劳动，严格遵守劳动纪律和工作时间。

第八十三条

公民必须爱护国家财产和社会团体与合作社财产，同一切贪污、浪费现象作斗争，以主人翁的态度管理好国家经济生活。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国家和社会团体与合作社的财产神圣不可侵犯。

第八十四条

公民要始终提高革命警惕，为国家的安全忘我斗争。

第八十五条

保卫祖国是公民最神圣的义务和最大的光荣。

公民必须保卫祖国，必须依照法律规定服兵役。

第六章　国家机构

第一节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务委员会委员长

第八十六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务委员会委员长是代表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的国家元首。

第八十七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务委员会委员长根据全体朝鲜人民一致的意志在最高人民会议选举。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务委员会委员长不选为最高人民会议议员。

第八十八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务委员会委员长的任期与最高人民会议任期相同。

第八十九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务委员会委员长是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武装力量最高司令官，指挥和统率国家的一切武装力量。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核武力的指挥权属于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务委员会委员长。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务委员会委员长也可将核武力使用权限委托给国家核武力指挥机构。

第九十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务委员会委员长具有以下权限：

一、领导国家全盘工作；

二、在最高人民会议闭会期间，可中止最高人民会议议长、内阁总理等重要干部的工作或对其任免；

三、使失去人民信任的最高人民会议议员辞职；

四、对最高人民会议或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通过的法令、政令、决定、指示，若不符合国家发展和人民要求，可行使否决权；

五、对有突出功绩的对象授予国家表彰；

六、接受他国外交代表的国书；

七、任免驻外外交代表；

八、批准或废除与外国缔结的重要条约；

九、行使特赦权；

十、宣布国家的紧急状态和战时状态，发布动员令；

十一、战时组织和领导国家防卫委员会。

第九十一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务委员会委员长发布命令、政令。

第二节　最高人民会议

第九十二条

最高人民会议是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的最高国家权力机关。

第九十三条

最高人民会议行使立法权。

最高人民会议闭会期间，其常任委员会也可以行使立法权。

第九十四条

最高人民会议由根据普遍、平等、直接选举的原则通过秘密投票方式选出的议员组成。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第九十五条

最高人民会议每届任期五年。

最高人民会议的下届选举，在最高人民会议任期届满以前依照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的决定举行。

因特殊原因不能如期举行选举时，其任期延长到举行选举时为止。

第九十六条

最高人民会议具有以下权限：

一、修改并补充宪法；

二、指定或修改并补充部门法；

三、批准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在最高人民会议闭会期间通过的重要部门法；

四、制定国家对内对外政策的基本原则；

五、选举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务委员会委员长；

六、根据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务委员会委员长的提名，选举或罢免国务委员会第一副委员长、副委员长和委员；

七、选举或罢免最高人民会议议长、副议长；

八、选举或罢免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秘书长和委员；

九、选举或罢免内阁总理；

根据内阁总理的提议，任免内阁第一副总理、副总理、委员长、相和其他内阁成员；

十、任免最高检察院检察长；

十一、选举或罢免最高法院院长；

十二、选举或罢免最高人民会议各专门委员会委员长、副委员长和委员；

十三、审批国家的国民经济发展计划及其执行情况的报告；

十四、审批国家的预算及其执行情况的报告；

十五、新设或撤销内阁委员会、省；

十六、听取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内阁、最高检察院、最高法院的工作报告，并采取相应的措施；

十七、决定有关部门向最高人民会议提交的条约的批准或废除。

第九十七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最高人民会议举行定期会议和临时会议。

定期会议，由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每年召开两次。

临时会议，在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认为有必要时，或者三分之一以上的议员提议时召开。

第九十八条

最高人民会议须有三分之二以上的议员出席才能开会。

第九十九条

最高人民会议由议长主持，无议长时由副议长主持。

第一百条

最高人民会议讨论的议案，由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务委员会委员长、国务委员会、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内阁和最高人民会议各专门委员会提出。

议员也可以提出议案。

第一百零一条

最高人民会议发布法令和决议。

最高人民会议发布的法令和决议，须经出席会议议员的过半数通过。

修改并补充宪法，须经最高人民会议三分之二以上议员赞成才能进行。

第一百零二条

最高人民会议设法制委员会、预算委员会、外交委员会等必要的专门委员会。

最高人民会议各专门委员会由委员长、副委员长和委员组成。

最高人民会议各专门委员会协助最高人民会议工作，拟定或审查国家的政策方案和法案，采取有关执行措施。

最高人民会议闭会期间，最高人民会议各专门委员会在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的领导下进行工作。

第一百零三条

最高人民会议议员具有不可侵犯权。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最高人民会议议员除现行犯外非经最高人民会议或在其闭会期间非经其常任委员会许可，不受逮捕或刑事处罚。

第三节　国务委员会

第一百零四条

国务委员会是国家权力的最高政策领导机关。

第一百零五条

国务委员会由委员长、第一副委员长、副委员长和委员组成。

第一百零六条

国务委员会任期与最高人民会议任期相同。

第一百零七条

国务委员会执行下列任务和权限：

一、讨论并决定国家的主要政策；

二、对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务委员会委员长命令、政令、国务委员会决议和指示执行情况进行监督并采取措施；

三、撤销与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务委员会委员长命令、政令、国务委员会决议和指示相抵触的国家机关的决议和指示；

四、在最高人民会议休会期间根据内阁总理的建议任免第一副总理、副总理、委员长、相以及其他内阁成员。

第一百零八条

国务委员会发布决议和指示。

第四节　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

第一百零九条

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是最高人民会议闭会期间的最高权力机关。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第一百一十条

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由委员长、副委员长、秘书长和委员组成。

最高人民会议议长、副议长兼任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委员长、副委员长。

第一百一十一条

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任期与最高人民会议任期相同。

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在最高人民会议任期届满、下届常任委员会选举产生之前，继续执行其任务。

第一百一十二条

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执行下列任务和权限：

一、召开最高人民会议；

二、审查和通过在最高人民会议闭会期间提出的新部门法草案、条例草案、现行部门法和条例的修改补充草案，将通过并实行的重要部门法提交下届最高人民会议批准；

三、审查和批准因特殊原因在最高人民会议闭会期间提出的国家国民经济发展计划和国家预算及其调整方案；

四、解释宪法、现行部门法和条例；

五、监督国家机关守法、执法情况，并采取相应措施；

六、撤销同宪法，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务委员会委员长命令、政令，最高人民会议法令、决议、国务委员会决议、指示，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政令、决议、指示相抵触的国家机关决议和指示，制止地方人民会议不适当的决议的执行；

七、进行最高人民会议议员的选举工作，组织地方人民会议议员的选举工作；

八、做最高人民会议议员的工作；

九、做最高人民会议各专门委员会的工作；

十、在最高人民会议休会期间，选举或罢免最高人民会议副议长、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秘书长、委员、最高人民会议专门委员会成员，并任免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各专门委员会成员。

十一、选举或罢免最高法院审判员和人民陪审员；

十二、指导地方人民委员会的主权工作

十三、新设或者变更行政单位和行政区划；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十四、进行同外国国会和国际议会机构的联系等对外工作。

第一百一十三条

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召开全体会议和常务会议。

全体会议由全体委员组成，常务会议由委员长、副委员长和秘书长组成。

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全体会议讨论并决定在执行常任委员会任务和行使权力方面提出的重要问题，其余问题在常务会议上讨论决定。

第一百一十四条

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发布政令、决议和指示。

第一百一十五条

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可以设立协助其工作的专门委员会。

第一百一十六条

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对最高人民会议负责。

第五节　内阁

第一百一十七条

内阁是国家主权的行政执行机关，是总括性的国家管理机关。

第一百一十八条

内阁由总理、第一副总理、副总理、委员长、相和其他必要成员组成。

内阁任期与最高人民会议任期相同。

第一百一十九条

内阁执行下列任务和权限：

一、采取执行国家政策的措施；

二、根据宪法和部门法，制定、修改和补充有关国家管理的条例；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三、领导内阁各委员会、省、内阁直属机关和地方人民委员会的工作;

四、设立或撤销内阁直属机关、重要行政经济机关和企业，采取改进国家管理机构的措施;

五、编制国家国民经济发展计划并采取相应执行措施;

六、编制国家预算并采取相应执行措施;

七、组织开展工业、农业、建设、运输、邮电、商业、贸易、国土管理、城市管理、教育、科学、文化、保健卫生、体育、劳动管理、环境保护、旅游及其他方面的工作;

八、采取巩固货币制度和银行制度的措施;

九、检查和监督建立国家管理秩序的工作;

十、采取维持社会秩序、保护国家及社会团体与合作社的财产和利益、保障公民权利的措施;

十一、同外国签订条约，进行对外工作;

十二、撤销与内阁决议和指示相抵触的行政经济机关的决议和指示。

第一百二十条

内阁总理组织和领导内阁工作。

内阁总理代表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

第一百二十一条

内阁召开全体会议和常务会议。

内阁全体会议由内阁全体成员组成，常务会议由总理、第一副总理、副总理和总理任命的内阁成员组成。

第一百二十二条

内阁发布决议、行政命令和指示。

第一百二十三条

内阁可以设立协助其工作的非常设专门委员会。

第一百二十四条

内阁对最高人民会议负责，最高人民会议闭会期间对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负责。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第一百二十五条

新当选的内阁总理代表内阁成员向最高人民会议宣誓。

第一百二十六条

内阁各委员会和省是内阁各部门执行机关，是中央各部门管理机关。

第一百二十七条

内阁各委员会和省在内阁的领导下，统一领导和管理各部门的工作。

第一百二十八条

内阁各委员会和省召开委员会会议和干部会议。

各委员会、省委员会会议和干部会议讨论和决定执行内阁决议、行政命令和指示的措施及其他重要问题。

第一百二十九条

内阁各委员会和省以及履行部门管理职能的内阁直属机构发布指示。

第六节　地方人民会议

第一百三十条

道（直辖市）、市（区）、郡人民会议是国家地方权力机关。

第一百三十一条

地方人民会议由根据普遍、平等、直接选举的原则，通过秘密投票方式选出的议员组成。

第一百三十二条

道（直辖市）、市（区）、郡人民会议每届任期四年。

下届地方人民会议的选举，在地方人民会议任期届满以前依照本级地方人民委员会的决定举行。因特殊原因不能如期举行选举时，其任期延长到举行选举时为止。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第一百三十三条

地方人民会议执行下列任务和权限：

一、审批地方国民经济发展计划及其执行情况的报告；

二、审批地方预算及其执行情况的报告；

三、采取本地区执行国家法律的措施；

四、选举或罢免本级人民委员会委员长、副委员长、事务长和委员；

五、撤销本级人民委员会、下级人民会议和人民委员会的不适当的决议和指示；

六、听取本级人民委员会所属道（直辖市）、市（区）、郡级机关的工作报告，并采取相应的措施。

第一百三十四条

地方人民会议召开定期会议和临时会议。

定期会议由本级人民委员会每年召开一至两次。

临时会议在本级人民委员会认为有必要时，或者三分之一以上议员提议时召开。

第一百三十五条

地方人民会议须有三分之二以上议员出席才能开会。

第一百三十六条

地方人民会议选举议长和副议长。

议长主持会议。无议长时由副议长主持会议。

第一百三十七条

地方人民会议通过决议。

第七节　地方人民委员会

第一百三十八条

道（直辖市）、市（区）、郡人民委员会是本级人民会议闭会期间的国家地方权力机关及其行政执行机关。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第一百三十九条

地方人民委员会由委员长、副委员长、事务长和委员组成。

地方人民委员会任期与本级人民会议任期相同。

第一百四十条

地方人民委员会执行下列任务和权限：

一、召开人民会议；

二、进行人民会议议员的选举工作；

三、做人民会议议员的工作；

四、在人民会议休会期间，选举或罢免该人民委员会副委员长、事务长、委员；

五、在人民会议休会期间，选举或罢免该法院的审判员、人民陪审员。

六、执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务委员会委员长命令、政令，最高人民会议法令和决议，国务委员会决议和指示，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政令、决议和指示，内阁决议、行政命令和指示和内阁委员会以及省及履行部门管理职能的内阁直属机构指示，本级地方人民会议和上级人民委员会的决议与指示；

七、组织和执行本地方的一切行政工作；

八、制订本地方的国民经济发展计划并采取执行措施；

九、编制本地方预算并采取执行措施；

十、采取维持本地区的社会秩序，保护国家及社会团体与合作社财产与利益，保障公民权利的措施；

十一、检查和监督本地区建立国家管理秩序的工作；

十二、领导下级人民委员会的工作；

十三撤销下级人民委员会的不适当的决议和指示，制止下级人民会议不适当的决议的执行。

第一百四十一条

地方人民委员会召开全体会议和常务会议。

地方人民委员会全体会议由全体委员组成，常务会议由委员长、副委员长和事务长组成。

地方人民委员会全体会议讨论和决定在执行自己任务与权限方面的重要问题，其余问题在常务会议上讨论决定。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第一百四十二条

地方人民委员会发布决议和指示。

第一百四十三条

地方人民委员会可以设立协助其工作的非常设专门委员会。

第一百四十四条

地方人民委员会对本级人民会议负责。

地方人民委员会服从上级人民委员会、内阁和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

第八节　检察院和法院

第一百四十五条

检察院是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的守法监察及起诉机关。

第一百四十六条

检察工作由最高检察院，道（直辖市）、市（区）、郡检察院和特别检察院进行。

第一百四十七条

最高检察院检察长任期与最高人民会议任期相同。

第一百四十八条

检察员由最高检察院任免。

第一百四十九条

检察院执行下列任务：

一、监察国家机关、企业、团体和公民是否严格遵守国家法律；

二、监察国家机关的决议和指示是否同宪法，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务委员会委员长命令、政令，最高人民会议法令和决议，国务委员会决议和指示，最高人民会议常任委员会政令、决议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和指示，内阁决议、行政命令和指示相抵触；

三、揭发违法犯罪分子，追究其法律责任，以保护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的政权和社会主义制度、国家及社会团体与合作社的财产以及宪法赋予人民的权利和人民的生命财产。

第一百五十条

检察工作由最高检察院统一领导，各级检察院服从上级检察院和最高检察院。

第一百五十一条

最高检察院发布指示。

第一百五十二条

最高检察院对最高人民会议负责，最高人民会议闭会期间对其常任委员会负责。

第一百五十三条

法院是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的审判机关。

第一百五十四条

审判由最高法院，道（直辖市）法院，市（区）、郡人民法院和特别法院进行。

判决以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的名义宣布。

第一百五十五条

最高法院院长任期与最高人民会议任期相同。

最高法院，道（直辖市）法院，市（区）、郡人民法院的审判员和人民陪审员任期与本级人民会议任期相同。

第一百五十六条

特别法院院长和审判员由最高法院任免。

第一百五十七条

法院执行下列任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一、通过审判活动，保护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的政权和社会主义制度、国家及社会团体与合作社的财产以及宪法赋予人民的权利与人民的生命财产；

二、监督所有机关、企业、团体和公民严格遵守国家法律，同阶级敌人和一切违法分子进行积极的斗争；

三、实施对财产纠纷的判决和裁定，进行公证工作。

第一百五十八条

审判由一名审判员和两名人民陪审员组成的法庭进行，在特别情况下，可以由三名审判员组成法庭。

第一百五十九条

审判公开进行，保障被告人的辩护权。

审判可以依法不公开进行。

第一百六十条

审判用朝鲜语进行。

外国人在审判中可以使用本国语言。

第一百六十一条

法院独立进行审判，依据法律进行审判活动。

第一百六十二条

最高法院是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的最高审判机关。

最高法院监督所有法院的审判工作。

第一百六十三条

最高法院发布指示。

第一百六十四条

最高法院对最高人民会议负责，在最高人民会议闭会期间对其常任委员会负责。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第七章　国徽、国旗、国歌、首都

第一百六十五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徽为椭圆形，周围是用写有「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字样的红带束起的稻穗，中间是雄伟的水电站，其上方有革命的圣山白头山和光芒四射的五角红星。

第一百六十六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旗，中间是红色宽面，其上下各有一白色细条，再上下是蓝色宽边，红面靠旗杆一边有一白色圆地，其中是五角红星。

旗幅纵横比例为一比一点六五。

第一百六十七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歌，是凝聚全体人民世代继承并永远发扬祖国美丽自然、悠久历史、灿烂文化和光荣斗争传统，在朝鲜劳动党领导下把社会主义祖国建设成为永恒的人民国家、世界强国的爱国信念和意志的全民颂歌。

第一百六十八条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首都是平壤。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확립하고 자주의 혁명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국가사업 전반을 조직진행하며 수령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적대를 세우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 식으로, 자력으로 발전시켜나간다.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대의 변천과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사회전반에 대한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끊임없이 강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3 대혁명수행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역할을 높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혁명화, 기술경제력의 고도화, 사회전반의 문명화를 다그쳐나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애국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인민의 권익을 믿음직하게 보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국가방위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나간다.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법률제도를 개선완비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국익수호를 불변의 원칙으로 틀어쥐고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위력한 정치적무기인 헌법을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것이다.

제 1 장 정치

제 1 조

우리 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공민은 거주지와 체류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 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 6 조

최고인민회의로부터 군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 7 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대의원이 선거자들의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 8 조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 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 1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 11 조

국가는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혁명적인 대중운동, 애국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 1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제 1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 1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 1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제 2 장 경제

제 1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

다.

제 17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 18 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 국가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는 대상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 19 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 20 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 21 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 2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 2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승리한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 24 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다.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

제 25 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농촌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지원을 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준다.

제 26 조

국가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모든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든다.

국가는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며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지방특색위주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국가는 지방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조건을 마련해주고 지방이 자체의 력량과 잠재력을 튼튼히 키워 공고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한다.

제 27 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사회와 집단,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내여 일하는 보다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 28 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 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 2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7 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 30 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며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 31 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 3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 3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제 34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킨다.

제 35 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제 36 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 3 장 문화

제 37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38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전민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제 3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를 배격하며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 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 40 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제 41 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 42 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애국자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운다.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제 43 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국가는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을 개선하여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 리상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킨다.

제 44 조

국가는 1 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 45 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낸다.

제 46 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후대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을 확대강화한다.

제 47 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다.

제 48 조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 49 조

국가는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 50 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 51 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 52 조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 53 조

국가는 혁명적이며 고상한 사회주의생활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어긋나는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한다.

제 54 조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며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도록 한다.

제 55 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 4 장 국방

제 5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방위에서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제 57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

제 58 조

국가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 59 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 60 조

국가는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다.

제 61 조

국가는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세우고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한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다.

제 5 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 6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 63 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 64 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 65 조

18 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박탈당한자, 정신장애자는 선거할 권리와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 66 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 67 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제 68 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제 69 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 70 조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정휴양제와 다양한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71 조

공민은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늘어나는 현대적인 의료시설과 국가사회보험,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72 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73 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과학과 문학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민을 우대한다.

국가는 공민의 지적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74 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제 75 조

영웅, 전쟁로병, 전시공로자, 영예군인,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해외군사작전참전렬사 유가족, 사회주의애국공로자, 제대장령, 세대 군관, 인민군 후방가족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 76 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에 대한 우대,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 77 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 78 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제 79 조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 80 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 81 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 82 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 83 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제 84 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 85 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 6 장 국가기구

제 1 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제 8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다.

제 87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

제 88 조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8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수도 있다.

제 9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장, 내각 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간부의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임명 또는 해임한다.
3. 인민들의 신임을 잃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사임시킨다.
4.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령, 정령, 결정, 지시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
5. 특출한 공로를 세운 대상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6. 다른 나라 외교대표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7.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
8.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9. 특사권을 행사한다.
10.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언한다.
11.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제 9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명령, 정령을 낸다.

제 2 절 최고인민회의

제 92 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 93 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 94 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 95 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 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제 96 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위원회 제 1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제 1 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 최고검찰소, 최고재판소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8.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 97 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 년에 2 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이 사회하며,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사회한다.

제100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1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102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아래 사업한다.

제 103 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 3 절 국무위원회

제 104 조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이다.

제 105 조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제 1 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 106 조

국무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07 조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국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중요정책을 토의결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 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령, 성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4.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제 1 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 108 조

국무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 4 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 109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 110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제 111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 112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회기간에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위원,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1.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2. 지방인민위원회의 주권사업을 지도한다.
13.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변경시킨다.
14.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 113 조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제 114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 115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16 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 5 절 내각

제 117 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 118 조

내각은 총리, 제 1 부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19 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 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 보호,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 120 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 121 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고, 상무회의는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 122 조

내각은 결정과 행정명령, 지시를 낸다.

제 123 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24 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 125 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 126 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제 127 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제 128 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 129 조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은 지시를 낸다.

제 6 절 지방인민회의

제 130 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 131 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 132 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 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제 133 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의 도(직할시), 시(구역), 군급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제 134 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 년에 1~2 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 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135 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 136 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의장이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회의를 사회한다.

朝鮮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제 137 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 7 절 지방인민위원회

제 138 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 139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40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 내각 위원회, 성과 부문별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내각직속기관 지시,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 인민회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7.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9.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10.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2.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13.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성,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 141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결정한다.

제 142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 143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44 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 8 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 145 조

검찰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준법성감시 및 기소기관이다.

제 146 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 147 조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48 조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 149 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정령,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행정명령,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 150 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제 151 조

최고검찰소는 지시를 낸다.

제 152 조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 153 조

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이다.

제 154 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 155 조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 156 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 157 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인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 158 조

재판은 판사 1 명과 인민참심원 2 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 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 159 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에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 160 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 161 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 162 조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 163 조

최고재판소는 지시를 낸다.

제 164 조

최고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 7 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 16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 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

제 166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 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1.65 이다.

제 167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와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길이 빛내여나가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한 인민의 나라,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방에 떨쳐갈 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담고있는 전인민적인 송가이다.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宪法